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89

발의연월일: 2025. 5. 23.

발 의 자:정춘생·신장식·이해민

김준형 • 박은정 • 김재원

황운하 · 서왕진 · 김선민

차규근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또는 그 경영책임자가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운영자, 법인 또는 기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2. 부정청구 행위의 종류 및 수법
- 3.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 및 피해의 규모
- 4. 위반행위를 통해 운영자 또는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 5. 위반행위의 기간, 반복성 또는 조직성 여부

- 6. 운영자 또는 법인의 자산 규모 및 경영상태
- 7. 피해구제 조치, 재발방지 노력 및 사후 개선 여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	
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	
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	i
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	
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	
관"으로 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	<u><삭 제></u>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u>경우</u>	
<u>4의2</u> . (생 략)	<u>4</u> .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또는 그 경영책임자가 제37조제 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운영자, 법인 또는 기관은 공단에 대하여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 도
- 2. 부정청구 행위의 종류 및 수 법
- 3.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 해 및 피해의 규모
- 4. 위반행위를 통해 운영자 또

 는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5. 위반행위의 기간, 반복성 또

 는 조직성 여부

 6. 운영자 또는 법인의 자산 규모 및 경영상태

 7. 피해구제 조치, 재발방지 노력 및 사후 개선 여부